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종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만 허용되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온라인 출생신고 수리 권한을 가진 동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신고종류를 정한 부분을 정비함 (안 제36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동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50조)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제50조제4항 중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을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신 설></u></p> <p>1. ~ 5.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제1항제5호</u>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p> <p>1.·2. (생략)</p> <p>⑤ (생략)</p> <p>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생략)</p> <p>④ <u>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u>를 받은 동의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 ----- ----- -----.</p> <p>1.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u></p> <p>2. (현행 제5호와 같음)</p> <p>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제2호</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 제4항</u>-----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327